



보도 일시	(지 면) 1. 6.(금) 석간 (인터넷) 1. 6.(금) 06:00	-
-------	---	---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 (044-204-7880)
		담당자	사무관	임상철 (044-204-7883)

소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

-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법을 공포 -

-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,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
- 소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, 교육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으로 소공인에 대한 안정적 인력 수급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소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소공인법”이라 한다.)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.

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.

이에, 이번 「소공인법」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반(인프라)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.

「소공인법」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,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,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기반(인프라)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.

아울러,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·상담·조사 및 정보제공·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“공포된 개정 「소공인법」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
“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·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. (생략)</p> <p>8.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9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7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<u>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,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·관리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<u>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8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<u>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·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에 대한-----</u>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</u></p>